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문장을 정비하고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제한 기준 신설(안 제12조의1)

- 위반 횟수 1회는 7일, 2회는 15일, 3회 이상은 30일 이용자격 일시 제한

나.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(안 제17조제10호, 제11호)

- 10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퍼센트 감면
- 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: 50퍼센트 감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시간 초과 및 타 강습반 무단 이용,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,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이용객의 시설이용시간 초과로 인한 시설혼잡 및 정상이용객 불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